

## 2021년 소방시설법 기본서 정오표(2021.8.10.)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81 ㉠ ㉡	전기사업법 제7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p 106 30번 문제 해설 ㉡	「전기사업법」 제7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p 130 (9)	통합감지설비	통합감지시설
p 170 89번 문제	발연량	발연량
p 220 (2)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p 268 20번 해설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p 388 5) ㉢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p 416 둘 째 줄 6.	「전기사업법」 제7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p 437 6.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p 450 (3)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 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p 450 (3) ㉡		(3) ㉡ 삭제
p 450 (3) ㉢	작동기능점검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1.3.30)

- 1) 제9조제2항제6호 : 「전기사업법」 제74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 2) 제23조제2항제6호 : 「전기사업법」 제73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3.25)

-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 2)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행정안전부 제공>